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3464 제출연월일 : 2024. 8. 30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,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 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「국회법」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 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

법률 제 호
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6조제4항 중 "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편"을 "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위반 및 같은 법 제4편"으로, "불공정거래조사 자료"를 "조사 자료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위반에 관한 조사 자료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금융위원회가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426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아 혂 행 개 정 제6조(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 제6조(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 의 제출) ① ~ ③ (현행과 같 의 제출) ① ~ ③ (생 략) 음) ④ 금융위원회는 「자본시장과 ④ ----- [']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제4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』 제147 편에 따른 불공정거래에 대하여 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의무 위반 및 같은 같은 법 제426조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같은 조 제5항에 법 제4편-----따른 조치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조치는 제외한다)를 한 경우에는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 밀보장에 관한 법률 | 제4조제4 항에도 불구하고 금융거래정보 ----- <u>조사 자료</u>--가 포함된 불공정거래 조사 자 료(조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로 한정한 다)를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.
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의 결과

O 수입 +145억원

(단위: 억원)

							(12	11. 7 11/
구 분	연 도	2025	2026	2027	2028	2029	합 계	연평균
	0		해	당	없	이ㅁ		
지출	0							
	소 계(A)							
수입	공시대상기업 중간예 납 계산방법 합리화	+29	+29	+29	+29	+29	+145	+29
	소 계(B)	+29	+29	+29	+29	+29	+145	+29
	총 비용(A-B)	△29	△29	△29	△29	△29	△145	△29

<작성방법>

- 위 표에 따라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증감액을 재정수반요인별로 구분하여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설명 (단위: 백만원 또는 억원 중 선택하여 기재)
- 추계기간: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,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함. 다만,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.
- O 재정수반요인별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않고 각각 기재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	제6조제4항	
		금융위원회가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자료에 「자본시장과
1	(금융거래에 관한	
		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제147조에 관한 조사자료를 추가함
	과세자료의 제출)	

<작성방법>

O 재정수반요인이 있는 조·항 등에 대하여 각 조·항 등별로 주요내용을 설명 (조·항

등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별도 항목별로 분류)

- 재정수반요인이 있으면 추계여부와 무관하게 모두 열거
- ※ 재정수반요인: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순증가 또는 재정수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	제6조제4항		
1	(금융거래에 관한	여	
	과세자료의 제출)		

<작성방법>

- 각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실시여부 및 추계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 등 기재
- 추계 미실시 사유: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'기존 실시 중인 사업의 명문화(기존사업명을 함께 기재)' 등 추계를 실시하지 않은 사유를 기재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O 비용추계의 상세내역과 동일하며, '24.12월 중에 개정법률안이 공포된다는 전제하에 작성

<작성방법>

- O 비용추계 전반에 대한 전제사항 등을 기재
- 가격기준, 비용추계 기간, 의안의 시행시점,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○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

- 조사자료 건당 추징세액에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연간 평균 건수를 곱하여 추정

<작성방법>

○ 의안의 심의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「Ⅱ. 재정수반요인」에 기재된 각 재

정수반요인별로 상세한 추계내역을 기재

- O 비용추계의 타당성을 가늠할 수 있도록 재정수반요인별로 추계에 활용된 통계자료 와 그 출처, 추계의 근거, 추계의 전제·가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
- 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비용이 있으면 별도로 추계 가능
-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추계하기 어려울 경우 일정범위로 기재 가능

IV. 부대의견

○ 본 추계결과는 추계에 이용한 가정이 변화할 경우 달라질 수 있음

<작성방법>

- O 비용추계서를 활용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(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포함) 등을 기재
-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기재

Ⅴ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·국장
남지형	이금석	정형	정정훈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지형	044-215-4226	njh90@korea.kr

^{*} 주된 작성자의 연락처를 기재

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원조달방안

I. 항목별 재원조달방안

O 해당없음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〈항목별 재원조달방안〉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20XX	20XX	20XX	20XX	20XX	합 계
○ 조세수입·세외수입						
또는 국채발행·차입						
○ 회계·기금 간 전입						
○기존 예산·기금의						
항목 간 조정						
○기타						
〈합 계〉						

Ⅱ. 부문별 재원조달방안

O	해당없음(세법	개정은	재원조달이	필요한	사업이	아님)	
---	---------	-----	-------	-----	-----	-----	--

〈부문별 재원조달방안〉

(단위: 백만원)

연 도 구 분	20XX	20XX	20XX	20XX	20XX	합 계
□ 중앙정부						
ㅇ 일반회계						
ㅇ ○○특별회계						
ㅇ ○○기금						
□ 지방자치단체						
ㅇ 일반회계						
ㅇ ○○특별회계						
ㅇ ○○기금						
□ 기타						
Ò						
(합 계)						

Ⅲ.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

1. 중앙정부의 항목별 재원조달 방안

○ '25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비과세·감면 효율화, 과세기반 확대 노력 등을 통하여 재원을 마련해 나갈 예정

IV. 부대의견

O 해당없음

V. 협의사항

협의시점	협의기관	주요 협의내용 및 협의결과
		해당사항 없음
		(세법 개정은 재원조달이 필요한 사업이 아님)

Ⅵ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·국장
남지형	이금석	정형	정정훈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남지형	044-215-4226	njh90@korea.kr